



제 424국회 (임시회)
제 1 차 정 무 위 원 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금융거래 정보 제공 대상에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업무 포함〉
■ 김현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461호)

2025. 4.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현정의원 등 14인

나. 제 안 일 : 2025. 1. 13.

다. 회 부 일 : 2025. 1.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면서 예외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시장이나 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한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식회사 등은 재무제표를 정기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감리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대형 회계분식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법도 고도로 지능화·다양화되어 사회적 피해가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회계분식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기업경영의 건전성 및 회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바목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함)에 따라 주식회사·유한회사에 대한 감리를 하는 경우 금융회사등에 거래정보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illegible]

금보험공사사장이 <u>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u> 가. ~ 마. (생략) <u><신설></u> 5. ~ 8. (생략) ② ~ ⑥ (생략)	리----- ----- ----- ---<u>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 또는 주식회사·유한회사에 대한 감리</u>----- ----- -----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u>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u>」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리에 필요한 경우 5.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

□ 「외부감사법」 제26조제1항제2호1)에 따른 감리 업무란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 및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의 회계처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업무(이하 “재무제표 감리 업무”라고 함)를 의미함.

-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2. 제23조제3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3.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및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이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외부감사법 시행령」²⁾은 증권선물위원회가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②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 ③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의 감리가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지 않은 감리 대상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고 있음.

○ 한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이하 “외부감사규정”이라 함)은 회계 감리의 사전적 절차로 재무제표 심사제도³⁾를 운영하고 있음.

- 재무제표 심사제도에 따라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회사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업무의 위탁)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6.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29조제1호·제3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회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회사 감리등”이라 한다)

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다. 금융감독원장의 회사 감리등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 회사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이 조 제2항제15호 및 제16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3)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감리등의 착수) ① 감리집행기관은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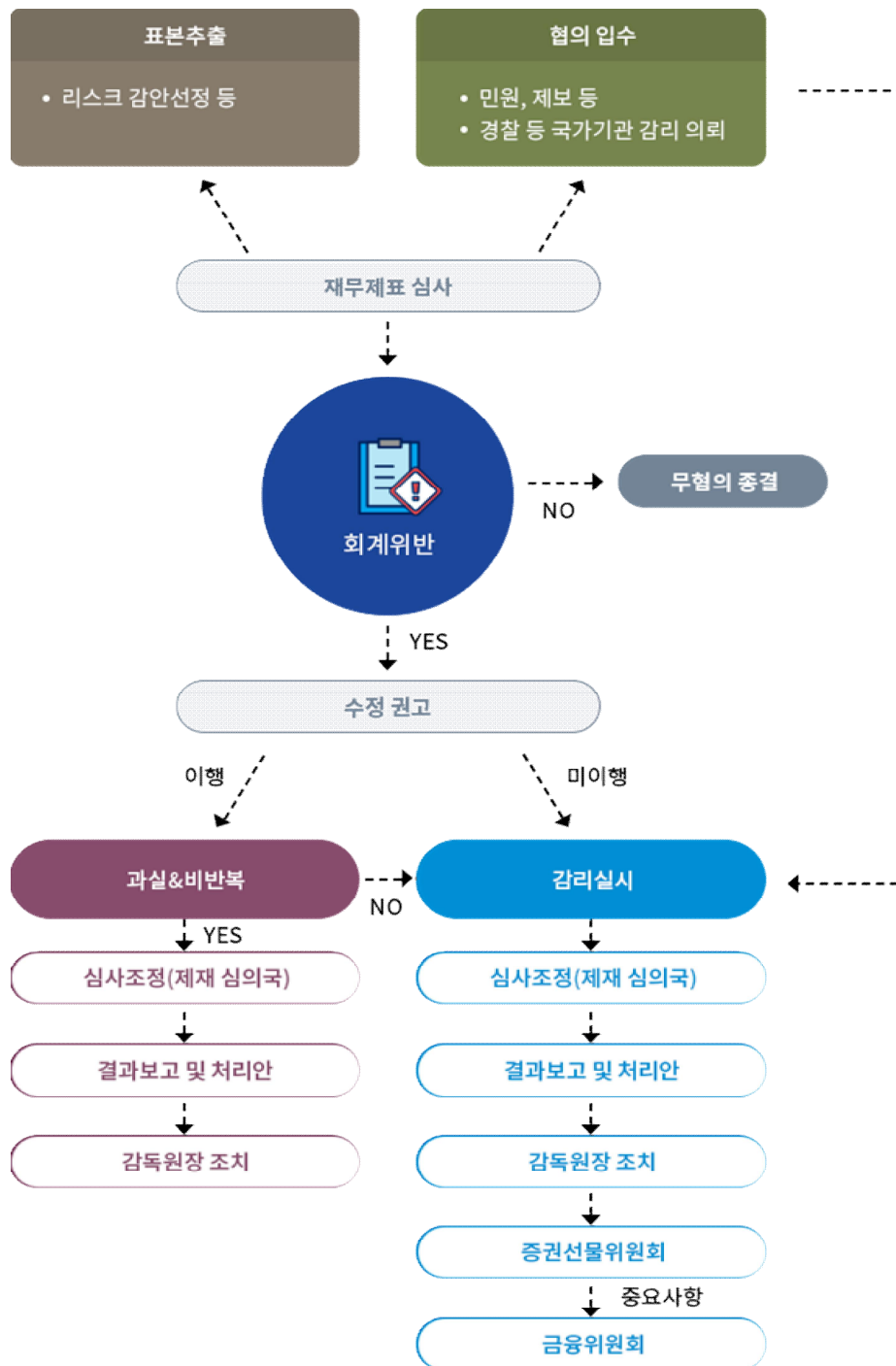
1. 회사가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산시스템에 의한 분석 등을 통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 또는 예방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감리집행기관이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무제표의 수정을 권고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후 경과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 결과 선정된 경우(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아닌 회사로서 지정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회사는 제외한다)

의 재무제표 오류가 있는지를 심사하여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인 경우에는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되, 중대한 위반 등이 발견되면 감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림 1] 재무제표 심사·감리 업무 절차



자료: 금융감독원

- 연간 금융감독원은 약 160여건의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심사 및 감리에 따른 조치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1] 금융감독원 최근 3년 간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업무 수행 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완료	조치	지적률	완료	조치	지적률	완료	조치	지적률
재무제표 심사	136	68	50	113	48	42.5	130	25	19.2
재무제표 감리	24	24	100	33	29	87.9	23	23	100
표본감리	6	6	100	4	4	100	5	5	100
협의감리	18	18	100	29	25	86.2	18	18	100
소계	160	92	57.5	146	77	52.7	153	48	31.4

자료: 금융감독원

□ 개정안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재무제표 감리 업무 수행 시 「금융실명법」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4)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 가.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거래 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하되,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음.

-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를 위해 금융회사등에 거래정보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리 업무에 대해서는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근

나. 채납자의 6촌 이내 혈족

다. 채납자의 4촌 이내 인척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검사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거가 없는 상황임.

- 개정안은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4호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재무제표 감리 업무에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등에 거래정보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분식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적발이 가능토록 하려는 취지임.

□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감리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의 회계분식 적발 및 증거수집능력이 제고되고, 이를 통해 기업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되며, 장기적으로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임.

- 현행 「외부감사법」 상 재무제표 감리 업무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 회계 장부 열람 등을 수행할 수 있으나, 이러한 조사 방법으로는 부정한 회계처리 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외부감사법」 제27조5)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 업

-
-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는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 등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회사 등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이러한 조사방법 외에도 「금융실명법」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권(계좌추적권) 등 감리수단을 추가로 확보하여 분식회계 증거 수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⁶⁾이 제기된 바 있음.

○ 금융감독원의 회계 분식 적발 및 증거수집능력이 제고될 경우 기업이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할 유인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기업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되고, 이를 통해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가 확립되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부도 과거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 중 하나로 ‘글로벌 수준의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금융실명법」을 개정하여 회계 감리에 계좌추적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⁷⁾.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 금융감독원, 「금융감독혁신 과제」, 2018. 7. 9.

7) 관계부처 합동,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2018. 1. 11.

□ 다만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의 예외사유를 확대할 필요성, 피조사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 측면 등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행 「금융실명법」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등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그 대상이 감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식회사·유한회사’⁸⁾로 확대되게 됨.

- 따라서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범위를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확대할 공익적 필요성과, 현행 「금융실명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비밀보장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22년, 금융감독원에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⁹⁾한 바 있음.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¹⁰⁾을 통해 감리 조사과정에서의 자료 요청 서면화, 피조사자 권익보호수단 활용안내 강화 등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함.

8) 이 중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재무제표 감리 대상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중 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금융기관 등임.

9) 증권선물위원회, 「제7차 임시 증권선물위원회(3.11.) 조치 의결」, 2022. 3. 11.

10) 금융위원회, 「회계감리절차가 한층 신속·투명해집니다」, 2022. 6. 2.

- 개정안에 따른 경우 해당 거래정보등 제공 사실은 명의자에게 통보되지 않게 되는데¹¹⁾, 이 경우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음.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허위재무제표 작성 등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을 얻어 정보취득도 가능하다는 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을 업무로 하는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회사의 금융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비판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06

11) 개정안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재무제표 감리 업무에 필요한 거래정보등 제공 요구권이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4호에 신설하고 있는데, 「금융실명법」 제4조의2에서는 동 조항을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